

# 임직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칙

제정 2023. 11. 24. 규칙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취업규정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9조의2(겸직허가) 및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3조(겸직허가요청)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과 허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겸직 허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일반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관계 법령, 내규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임직원(휴직 또는 정직 중인 직원 포함)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겸직이란 임직원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리업무란 계속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계속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여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④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임직원은 진흥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면권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조(영리업무의 금지)** 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업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진흥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진흥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사업자 명의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경우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로,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 ②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1.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단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
  2.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3. 그 밖에 임면권자가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진흥원의 이익과 개인 이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 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 ④ 진흥원과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한다.

**제6조(겸직 허가)** ① 임직원이 제5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징계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겸직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겸직 허가 신청)** ① 임직원은 겸직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내용(겸직 기간, 겸직 내용, 수익 발생 명세 등 포함)을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한 후 진흥원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 그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허가 기간 신청은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해당 임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때는 겸직 허가를 취소한다.

1. 겸직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 관련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 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임면권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겸직 허가 심사)** ① 진흥원의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 허가를 신청한 임직원 겸직 허가 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 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임면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 성격, 보수,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겸직 허가 여부 결정)** 임면권자는 해당 임직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통보)**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은 서면으로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현황 조사)** ① 원장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에 소속 임직원의 겸직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겸직 현황 조사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겸직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의무)** 임직원은 본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 허가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겸직 허가 대상이면 반드시 임면권자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임직원은 제12조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제2장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운영기준

**제14조(기본방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

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중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통하여 보안 및 직원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및 진흥원 임직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할 수 있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및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2.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진흥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
3.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진흥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4.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직·간접광고 포함)
5.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6.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6조(위반조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직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 금지, 콘텐츠 삭제요청,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2023. 11. 24. 규칙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검직 허가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검직 허가신청 및 신청을 통하여 검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사후 허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 직 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 직 신 청 내 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 블러거·유튜버 등 개인방송 겸직의 경우 채널주소 입력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물건 명기 (상가 : 개, 오피스텔: 개, 아파트: 개, 주택: 개) …상가·주택의 경우 건물이 아닌, 소득발생 개별 물건으로 명기			
	겸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정도					

- 첨부: 1. 상위 결재자 검토의견서 1부.  
2. 관련서류 1부.

20 . . .

신청자

(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귀하

# 상위 결재자 검토의견서

○ 직무상의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예	아니오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로 판단	예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기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시)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	아니오

(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귀하

